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0. 20.(수) 10:00

제23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동의안
[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]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39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10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1.10. 7.

2. 제안이유

금천탁구회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공공체육시설로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대상시설 : 금천탁구회관

1) 시설현황 : 탁구대 8대, 냉·난방기, 정수기

시설명	소재지	시설면적	종사자 수	비 고
금천탁구회관	시흥대로 51길 93, 3층	70평(231㎡)	6명	

나. 위탁개요

1) 계약기간 : 2022. 3. 1. ~ 2025. 2. 28.(3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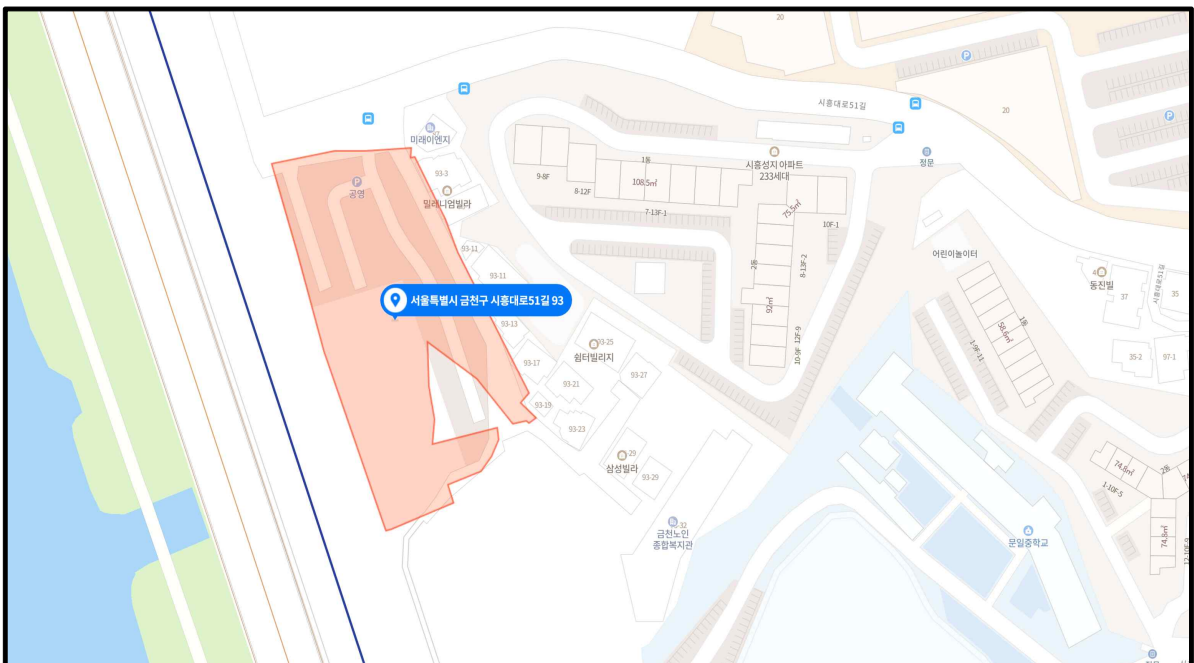
2) 위탁내용

- 금천탁구회관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
- 관내 탁구동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

3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공개모집

4) 위탁료 : 11,000,000원

다. 탁구회관 모습 및 위치도

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, 제27조
- 「금천구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4조
- 「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「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21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안이유

- 본 동의안은 금천탁구회관의 민간위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검토결과

- 현재 금천탁구회관이 위치해 있는 시흥빛물펌프장 3층은 2011년부터 주민이용시설로 사용되어 오던 공간으로 당초 관리부서인 치수방재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변경되면서 정식 위탁계약 없이 탁구연합회에 관리를 위임한 상태로 탁구시설로 운영되어 왔음.
- 그동안 회계관리 문제 및 시설의 무상사용에 따른 타 공공체육 시설운영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던 바

- 「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 의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.
- 탁구회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관계법령 1부.

관 계 법 령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0조(사용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2조(사용·수익허가)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
2.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[전문개정 2010. 8. 4.]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

제14조(위탁관리)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·관리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7.1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<개정 2016.7.18>
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<개정 2016.7.18.>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

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,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·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06.01, 2013.12.31, 2015.10.8.>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06.01, 2013.12.31>

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<개정 2009.06.01., 2013.12.31>